

## 요약

# 사업장 안정적 성장에 환경이 필수 성장·환경 통합지원체계 구축해야

## 대규모사업장은 올부터 통합환경관리... 소규모사업장은 매체별 관리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 환경관리방법은 오염물질의 최종배출구 관리에 집중하므로 오염물질 배출의 사전예방보다 사후처리 중심으로 흘러왔다. 또한, 매체별 관리방법은 사업장뿐 아니라 행정에도 부담을 가중해 복잡하고 다원화되는 환경문제와 산업생산체계의 관리방법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빈번했다. 더욱이 오염물질 배출이 특정 환경 매체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동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도 매체별 환경관리방법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EU의 통합환경관리 대상은 환경오염물질배출이 많은 업종 중심의 대규모사업장이다. 하지만 EU보다 먼저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추진한 영국, 독일은 중소규모사업장까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일부 업종의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는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 및 허가대상이지만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사업장과 이에도 속하지 않는 규모 미만의 영세 소형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즉, 서울에는 통합환경관리 대상인 대규모사업장은 40개소 내외다.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제조업체 수는 61,218개소이다. 이 중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56,589개소로 서울시 전체 제조업체의 92.4%에 이른다. 모든 제조업체가 대기, 수질, 소음, 악취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나 각 오염 매체 관련법이 규정하는 배출시설에는 제조업종 대부분이 포함된다.

##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지원조직, 성장·환경으로 분리 '통합관리 안돼'

중앙정부, 서울시 등 국내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제도와 이를 근거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 관리를 위한 제도와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즉, 대부분 정책 및 제도가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서울시 지원조직도 '안정적 경영 및 성장'은 경제진흥본부, '환경관리'는 기후환경본부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다. 소규모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두 분야 간 협력체계가 갖춰 있지 않아 사업도 각각의 목적대로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 및 시민의식 향상으로 이제는 사업장의 안정적 성장에 '환경'이 필수적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미네소타주도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과 '환경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두고 있거나, 두 조직 간 협력체계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사업장 지원을 총괄 계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경영 및 성장' 지원조직과 '환경관리' 지원조직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사업이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소규모사업장 실제 환경개선하려면 경제적·기술적 지원이 병행돼야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가 실제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현장기술지원은 컨설팅 중심이다.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도 영세한 사업장이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기술을 도입해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적 환경문제 진단과 함께 환경관리 기술적용을 위한 지원금, 용자 등 경제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도 소규모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현장 전문가와 종사자 설문결과도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환경관리 개선에 필요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소규모사업장 환경관리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이 저비용으로 쉽게 적용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적정기술 개발 촉진과 이를 위한 R&D 연구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는 先 지원, 後 관리대상에 단계별 포함

제조업종 대부분은 대기, 수질, 악취, 화학물질 등 각 오염 매체 관련법에 따라 3~4개 이상의 환경 분야 배출시설에 해당해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외 세탁업, 자동차 수리업 등 다른 업종도 2개 이상의 환경 분야 배출시설에 속한다. 이처럼 다수의 업종이 다양한 환경 분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고려하면 소규모사업장도 통합환경관리 방식이 더 효율적인 환경관리 방식이다. 다만, 소규모사업장의 영세성 및 비전문성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환경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성장', '환경'으로 각각 분리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환경' 총괄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과 '환경'을 총괄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하여 소규모사업장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협력기구를 구성한다. 협력기구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경제진흥본부와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계획하는 기후환경본부 등이 참여해 소규모사업장 통합지원을 위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평가한다. 협력기구는 우선 통합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원할지도 결정한다. 협력기구 운영이 환경까지를 고려한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끌 것으로 본다.

협력기구의 계획에 따라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는 대상 업종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적정기술 개발 및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소통창구 역할로 설립된 자영업지원센터가 관련 정보제공·홍보를 총괄하면서 업종별로 조직된 지원센터와 협력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서울지역의 대학자원과 연계해 인력자원을 확대 구성하고 현재의 교육과 사업장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 통합지원 1순위로 6개 업종, 2순위로 5개 업종 선정해 단계별 진행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다. 서울시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지원제도와 사업이 업종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제도와 조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업종은 유사한 환경문제를 경험하므로 집중적인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합지원 우선순위도 업종 선정으로 접근했다. 통합지원 1순위는 업체 수가 많고 기존 사업·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이면서 관련 지원센터 등 이미 조직이 구축되어 사업 진행이 수월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6가지 업종을 선정했다. 2순위로 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기술지원 주요 대상인 업종을 추가로 고려해 5가지 업종을 선정했다.

### ✓ 통합지원 1순위 업종

- 고려사항: 기존 사업·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업체수 多) + 지원센터 등 이미 조직 구축
- 6개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통합지원 2순위 업종

- 고려사항: 기존 사업·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업체수 多)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지원 주요 대상
- 5개 업종: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그림 1] 소규모사업장 통합지원 우선 적용 업종(안)

##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법적 근거 확보 위해 조례 개·제정 필요

단기적으로는, 소규모사업장의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기존의 소공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제정한 '서울특

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표 1]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지원을 위한 기존 서울시 조례의 추가 항목 예시**

- 
- 제2조(사업장의 환경오염 배출 개선)
-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또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오염 배출 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오염 배출 방지 및 저감 설치 사업비용
  2. 환경오염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3. 환경오염 배출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 ② 사업장의 환경오염 배출 개선사업의 지원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적극적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조례에는 소규모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계획 수립, 사업장 환경실태조사, 경제적 및 기술적 지원, 적정기술 개발지원, 기존의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계획과 연동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